

**CSSK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구매 주문서 일반 약관**

**우선순위.** 일반 약관(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특별약관 포함) 및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첨부 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이 우선한다. 만약,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가 CSSK와 공급자(Supplier) 사이의 용역 서비스 계약 또는 공급 계약과 함께 작성된 경우, 해당 계약의 조건이 다른 모든 조건보다 우선한다.

**1 정의**

- 1.1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표현들은 아래 기재된 의미를 가진다"
  - 1.1.1 "고객(Client)"이란,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라 장비(Materials)를 구매한 고객 및 그 법적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의미한다.
  - 1.1.2 "CSSK"이란, 커민스판매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및 그 법적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의미한다.
  - 1.1.3 "일반 약관(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란 아래 명시된 약관을 의미한다.
  - 1.1.4 "현장(Jobsite)"이란 장비(Materials)가 설치될 토지 및 기타 장소 및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현장으로 특정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 1.1.5 "장비(Materials)"란, (a)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라 공급자(Supplier)가 CSSK에게 공급하는 장비, 기계, 도구, 기구, 부품 또는 기타 물품 및 (b)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급자(Supplier)에게 공급하는 장비, 기계, 도구, 기구, 부품 또는 기타 물품의 의미한다.
  - 1.1.6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란, 공급자(Supplier)에게 발행된 구매주문서 양식, 특별약관(존재하는 경우) 및 일반약관과, 그에 첨부 또는 인용된 제품사양서, 요청서, 도면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의미한다.
  - 1.1.7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이란 CSSK가 공급자(Supplier)에게 발행한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를 의미한다.
  - 1.1.8 "서비스(Service)"란 검사, 현장(Jobsite)에서의 서비스, 장비(Materials)의 설치(계약상 요구되는 경우) 및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라 공급자(Supplier)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의미한다.
  - 1.1.9 "특별 약관(Special Terms and Conditions)"이란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특유의 약관으로서, 세부사항이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에 첨부된 것을 의미한다.
  - 1.1.10 "하수급인(Sub-Supplier)"이란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와 관련하여 공급자(Supplier)가 사용하는 장비, 기계, 도구, 기구, 부품, 물품 또는 기타 용역 또는 서비스를 공급자(Supplier)에게 제공하는 개인, 법인, 회사를 의미하며, 그 법적 승계인 또는 적법한 양수인을 포함한다.
  - 1.1.11 "공급자(Supplier)"란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가 발행된 개인, 법인, 회사를 의미하며, 그 법적 승계인 또는 적법한 양수인을 포함한다.

**2 계약의 승낙 및 완전성**

- 2.1 본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은 CSSK의 장비(Materials) 및/또는 서비스(Service)에 대한 구매 제안이며, 공급자(Supplier)가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를 수령한 경우 그 수령사실을 CSSK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2.2 공급자(Supplier)가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에 대하여 승낙하는 경우(서면 또는 구두로 수령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장비(Materials)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서비스(Service)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낙하였는지 여부는 불문) 공급자(Supplier)가 본 일반약관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 2.3 공급자(Supplier)가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을 승낙하는 경우,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는 CSSK와 공급자(Supplier) 사이의 완전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2.4 CSSK 또는 공급자(Supplier)가 제시하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조건과 모순되는 내용의 서면 또는 구두의 사전 합의 및 계약은, (a) 본 계약상 조건으로 대체되거나, (b) 공급자(Supplier)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조건으로 추가된다.
- 2.5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CSSK는 서면에 의한 것인지 구두에 의한 것인지, 법령 또는 관습상 명시된 것인지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어떠한 진술, 표현, 약정, 유인 또는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 2.6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조건은 당사자들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개정, 수정될 수 있다.
- 2.7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CSSK는 CSSK와 공급자(Supplier) 사이에 전달되거나 교환되었던 다른 견적서 또는 기타 문서에 기재된 최소 공급 조건 또는 최소 수량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 2.8 직접 구매를 위한 계약금액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CSSK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공급계약(Direct Supply Agreement)을 체결하며, 그러한 직접공급계약은 그에 따라 유효 되고, 본 구매 주문서에 우선한다.

**3 모순 또는 상충**

- 3.1 공급자(Supplier)는 CSSK로부터 수령한 모든 서류 및 정보가,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3.2 만약, 공급자(Supplier) 또는 CSSK가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포함된 서류 중 다른 내용과 모순되거나, 상충되거나 또는 불명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공급자(Supplier)는 즉시 CSSK에게 모순,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3.3 3.2조와 관련한 분쟁, 다툼 또는 불분명한 점은 우선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의에 의한다.

**4 가격 및 대금지급**

- 4.1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달리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특정되어 있는 모든 구매가격은 고정된 것으로서, 가격 상승 또는 기타 다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CSSK의 구매팀(Purchasing Department)의 구매가격 조정안에 대한 사전 서면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조정되지 않는다.

- 4.2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달리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사용, 또는 제조국 및 수입국의 관련 세금 및 모든 요금, 수수료 및 기타 비용(포장 및 배달 비용 포함)은 구매가격에 포함된다.
- 4.3 대금지급기한은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60일로 한다. 보다 명확히 하면,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장비(Materials)의 손상, 하자 또는 요구사항 미달에 대하여 CSSK가 이를 수락하거나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4.4 CSSK는, 공급자(Supplier)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결제대금을, CSSK가 공급자(Supplier)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본 거래 주문서 관련 금융 여부 불문)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4.5 CSSK는 CSSK가 공급자(Supplier)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공급자(Supplier)가 지급보류나 지급 거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결제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CSSK의 이러한 권리행사는 공급자(Supplier)의 CSSK에 대한 거래 조건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CSSK는 공급자(Supplier)가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조건을 위반하여, CSSK에게 실제로 손실,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CSSK가 피해를 입거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대금결제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CSSK는 공급자(Supplier)가 CSSK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공급자(Supplier)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CSSK가 지급을 거부한 금액과 합의가 이루어진 금액의 차액을 공급자(Supplier)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5 인도 조건**

- 5.1 장비(Materials)의 인도 조건은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기재된 바와 같다.
- 5.2 장비(Materials)의 인도는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에 특정된 날짜 또는 CSSK가 별도로 서면으로 동의한 날짜에 이루어진다. 공급자(Supplier)의 기한 준수는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공급자(Supplier)의 의무 이행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급자(Supplier)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5.3 공급자(Supplier)는 제5.2조를 준수하면서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에 특정된 장소 및 시간에 대하여, CSSK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장비(Materials)를 인도하여야 한다.
- 5.4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특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장비(Materials)가 인도되는 경우, 공급자(Supplier)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에게 반환 및 반품 조치한다. CSSK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서 요구되거나 요청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된 장비(Materials)(서비스 포함)에 대하여는 대금 지불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5.5 모든 포장에는 공급자(Supplier)의 명칭 및 CSSK의 구매 주문 번호 및 참고 사항, 배송지 주소, 공급자(Supplier)의 주소 및 기타 CSSK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5.6 공급자(Supplier)는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Materials)에 대하여 적절한 포장, 적재 및 고정(tie-down)할 책임을 부담한다. 포장, 운반, 적재 또는 저장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기재된 구매가격에 포함된다.
- 5.7 모든 장비(Materials)는 장비(Materials)의 성질에 맞추어 일반적인 화물의 취급 및 장기 보관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만약 장비(Materials) 또는 그 일부가 포장상 실수 또는 포장의 불충분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된 장비(Materials) 또는 해당 부위는 제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자(Supplier)의 비용으로 수리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운송 중 손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공급자(Supplier)가 부담한다.
- 5.8 공급자(Supplier)는 CSSK의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CSSK의 공급자(Supplier)에 대한 추가 통지를 수령할 때까지 장비(Materials)의 운송 및 인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6 소유권의 이전**

- 6.1 인도 조건에 따라 장비(Materials)가 CSSK에게 인도되는 때 장비(Materials)의 법적 소유권 및 이익의 주체가 CSSK에게 이전된다. 단, 장비(Materials)가 손상되거나 하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요구사항에 미달한 경우 CSSK가 보유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 6.2 공급자(Supplier)는 공급자(Supplier)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장비(Materials)에 관하여 질권 등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관련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6.3 CSSK는 CSSK가 장비(Materials)에 관한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장비(Materials)에는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분쟁도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의 작성을 언제든지 공급자(Supplier)에게 요청할 수 있다. CSSK는 위 증거 서류를 수령할 때까지 장비(Materials)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 품질**

- 7.1 공급자(Supplier)는 (a) 모든 장비(Materials)가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와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제품사양서, 도면 및/또는 견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의도한 목적에 적합 충분하고, 상품성이 있으며, 상급의 재료 및 기술로 제작되었고,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b) 인도된 어떠한 장비(Materials)도 CSSK가 공급자(Supplier)로부터 받은 해당 견본 또는 과거 견본의 품질 또는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증한다. 공급자(Supplier)의 보증은 CSSK가 제품의 수령, 검사 또는 대금지급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장비(Materials)를 위한 서비스(Service)가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Supplier)는 적시에 성실하고 효율적이며 숙련된 방법으로 서비스(Service)를 제공할 것을 보증한다.
- 7.2 CSSK, 고객(Client) 및 그들이 지정한 대리인들은 공급자(Supplier) 및/또는 어떠한 하수급인(Sub-Supplier)이 품질보증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공급자(Supplier) 및 어떠한 하수급인(Sub-Supplier)의 현장(Jobsite)을 직접 출입할 권리가 있다.
- 7.3 공급자(Supplier)는, 제품사양서, 도면 및/또는 견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조건 또는 인도일정 등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어떠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대해 승낙하기 전에 CSSK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7.4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장비(Materials)가 존재하는 경우, CSSK는 이에 관하여 공급자(Supplier)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a) 이러한 통지 직후로부터 CSSK가 특정한 기간 내에 당해 장비(Materials)를 반환하고 공급자(Supplier)가 자신의 비용으로 장비(Materials)를 수리·교체 또는 서비스(Service)를 다시 제공하도록 하거나, (b) 필요한 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공급자(Supplier)에게 청구하거나, (c) 장비(Materials)를 공급자(Supplier)에게 반환하고 CSSK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격의 전액을 환불받지 않음을 일반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만, CSSK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공급자(Supplier)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7.5 공급자(Supplier)가 장비(Materials)의 구성 부품들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의 혜택을 받고 이러한 보증의 혜택이 양도 가능한 것인 경우, 본 약관에 의하여 이는 CSSK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또한, CSSK는 고객(Client)들에게 공급자(Supplier)가 제공한 보증을 양도하여야 하며, 공급자(Supplier)는 그러한 양도의 효력이 CSSK 및 고객(Client)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6 본 제7.3조의 진술, 확인 및 보증은 본 약관에 따른 장비(Materials)의 수령 또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해제 이후에도 유효하며, 어떠한 적용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상 CSSK의 권리 및

공급자(Supplier)가 CSSK에게 추가로 명확한 사항은 이와 별개로 인정된다. 어떠한 묵시적 진술, 확약 또는 보증도 제외되지 않는다.

7.7 공급자(Supplier)는 다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 (a) 서비스 이행의 감독에 대한 완전한 단독 책임을 부담한다; 및
- (b) 적절한 자격이 있고 경험이 있는 직원이 이러한 감독을 이행하도록 한다.

7.8 공급자(Supplier)는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기구가 적절하고, 원활한 작동 상태에 있으며 모든 관련 산업 기준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보증할 것을 동의한다.

7.9 공급자(Supplier)는 모든 적절한 안전 조치가 가능 중임을 보증할 것을 동의하며, 이는 다음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고품 관리 계획, 비상 대책 계획, 위해 및 위험 평가, 그리고 위험 통제 조치.

7.10 공급자(Supplier)가 상기 언급된 의무를 커민스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행함을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 커민스는 여하한 책임 부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8 계약 조건의 변경

8.1 CSSK는 언제든지 공급자(Supplier)와 협의한 이후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본 약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작업 또는 제공되어야 할 물품에 대한 다음 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경을 할 수 있다: (i) 제품/서비스, 도면 및/또는 견본; (ii) 운송 또는 포장 방법; (iii) 인도일차, 시간 및/또는 장소; 그리고 (iv) 최초 제품 주문 수량

8.2 공급자(Supplier)가 가격, 품질 또는 인도에 관한 어떠한 합리적인 변경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CSSK에게 즉시(늦어도 당해 변경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경 제안은 CSSK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 보증

9.1 공급자(Supplier)는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의해 공급된 모든 장비(Materials)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또한 안전, 품질, 환경 등에 관한 모든 적용 법령, 규제, 및 업계 표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9.2 구매 주문서 양식(Purchase Order Form)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장비(Materials)가 최종적으로 도입되어 CSSK가 상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완성된 장비(Materials)의 인도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내에, 장비(Materials) 또는 구성 부품에 손상, 하자, 요구사항 미달,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Supplier)는 CSSK 및 고객(Client)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한다. 나아가, 무상수리가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Supplier)는 본 보증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개선(remedial) 작업을 위하여 추가로 12개월간 보증을 제공한다.

9.3 최초 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보증기간 만료 때까지 그러한 하자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CSSK는 이에 관한 통지가 불가하므로, 공급자(Supplier)의 보증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9.4 공급자(Supplier)는 본 약관에 따른 수리 및/또는 교체를 적시에 CSSK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및/또는 CSSK가 공급자(Supplier)를 대신하여 장비(Materials)를 수리 및/또는 교체한 경우, CSSK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9.5 본 제9조에 의한 CSSK의 권리는, CSSK가 장비(Materials)(서비스를 포함함)의 여하한 하자, 요구사항 미달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보유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기타 권리 또는 구제수단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10 면책과 책임; 보험

10.1 CSSK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급자(Supplier)는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 손실, 손해, 청구, 소송, 신청, 비용 일체로부터 CSSK, 고객(Client) 및 그들의 승계인들과 양수인들을 면책하고 보호한다. 이러한 공급자(Supplier)의 책임은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 재산상 손실 및 손해배상 또는 보상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0.2 공급자(Supplier)는 별첨 A에 기재된 보험요건을 준수하고 달리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공급자의 하수급자도 이를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 11 컴플라이언스

11.1 공급자(Supplier)가 CSSK 또는 CSSK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시-지방 또는 기타 단위 정부기관의 법령, 규칙, 규제, 명령, 허가, 동의, 결정 및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또는 본 약관상 공급자(Supplier)의 의무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위 일반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Supplier)가 CSSK와 함께 또는 CSSK를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a)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의 독점규제법을 준수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어떠한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정부 공무원 혹은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선물, 대가지급, 약속 또는 대가지급의 약속을 하거나 이를 승인하지 않으며, (b)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관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고, (c) 적용되는 무역관리법령은 물론 세관, 수출, 재수출, 수입에 관한 법령, 규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11.3 공급자(Supplier)가 CSSK 또는 CSSK를 위하여 사업을 하는데 있어 법령 또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CSSK는 어떠한 책임부담도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공급자(Supplier)는 필요한 개선(remedial) 작업, 벌금, 과태료 등 그러한 컴플라이언스 위반(non-compliance)으로 발생하는 여하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12 준거법, 분쟁 및 중재

12.1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공급자(Supplier)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임의관할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

12.2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성질의 분쟁은 가능한 신속하게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로써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CSSK와 공급자(Supplier)간 발생한 어떠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공급자(Supplier)는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 13 인도의 지연 및 손해배상예정

13.1 공급자(Supplier)가 인도일 또는 본 약관상 지정된 일자까지 재료, 도면 및 또는 선적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CSSK는 공급자(Supplier)에게 구매가격의 10%의 한도 내에서 지체일수 1일당 구매가격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3.2 CSSK는 공급자(Supplier)의 단독 비용으로 지연된 장비(Materials)를 항공 운송하는 방법으로도 인도의 지연 상태를 단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도의 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14 계약 해지

14.1 공급자(Supplier)가 작업 개시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거나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적시 납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의 신속성과 상당한 주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업무 현황에 대한 CSSK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CSSK는 재량에 따라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4.2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재량으로 구매주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공급자(Supplier)가 CSSK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청구를 완전히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것)는 CSSK와 공급자(Supplier) 간의 상호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지 일까지 충분히 수행된 업무 정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CSSK는 CSSK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구매주문의 종료로 인하여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 또는 간접비용을 포함한 간접적 손해, 부대적 손해, 특별 손해를 공급자(Supplier)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14.3 공급자(Supplier)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운영을 중단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급자(Supplier)에 의해 또는 공급자(Supplier)에 대하여 파산 또는 도산 절차가 제기될 경우, 파산관재인, 청산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가 임명되거나 신청된 경우, 공급자(Supplier)가 자신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영업상 중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CSSK는 재량에 따라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4.4 공급자(Supplier)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5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해지 전 계약의 위반 또는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14.6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CSSK는 폭우, 가뭄, 화재, 전쟁, 폭동, 테러 행위, 천재지변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에는 책임이나 비용 없이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5 중단

15.1 CSSK는 공급자(Supplier)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을 언제든지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공급자(Supplier)는 CSSK의 통지일로부터 통지서에 명시된 날까지 업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5.2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 CSSK는 CSSK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 중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 외환 손실 또는 기대이윤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6 지급보류

CSSK는 공급자(Supplier)의 작업이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정한 내용으로 완료되지 않거나 공급자(Supplier)의 계약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구매대금 총액 중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율 상단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공급자(Supplier)는 CSSK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CSSK는 이를 승인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지급보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17 지적재산권

17.1 CSSK의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와 관련하여, CSSK가 공급자(Supplier)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자(Supplier)가 주문에 따라 특별하게 제작한 사양, 도면 또는 기타 문서는 그에 대한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과 함께 CSSK의 독점적인 재산이고, 공급자(Supplier)는 그러한 사양, 도면 또는 기타 문서를 제3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a) 공급자(Supplier)의 과실 없이 공개된 경우

(b)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단, 공급자(Supplier)는 CSSK에게 법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고 금지명령이나 보호명령을 획득하려는 CSSK의 시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c)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단, 제3자도 본 약관에서 명시된 것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17.2 공급자(Supplier)는 CSSK에 의하여 지정된 디자인(이전의 공급자(Supplier)의 표준 상업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작성된 모든 물품을 다른 개인, 법인 또는 회사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17.3 공급자(Supplier)는 CSSK의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외에, 제품/서비스, 도면 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4 CSSK가 공급자(Supplier)에게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제작물 제작을 위임한 경우, 공급자(Supplier)가 제공한 제작물은 CSSK의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은 CSSK의 독점적인 재산이다.

## 18 지적재산권

18.1 창작된 발명, 발견, 특허, 저작권, 상호, 영업비밀, 마스크 워크(mask works)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공급자(Supplier)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의 모든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은 CSSK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공급자(Supplier)는 본 조에 따라 CSSK에게 지정된 모든 권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실행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2 공급자(Supplier)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공급자(Supplier)의 이행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양도되거나 등록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 19 비밀유지

CSSK가 기밀성이 있는 연구, 개발, 기술, 제조, 재무 또는 기타 상업 정보 또는 "노-하우"(CSSK의 제품, 기술, 장비, 제조 과정, 발명, 특허 출원, 디자인,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CSSK의 고유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정보, 경쟁사들 사이에서 유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정보, CSSK의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함)를 공개하거나 공급자(Supplier)에게 접근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급자(Supplier)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를 타인이나 다른 회사에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기밀성이 있는 도면 또는 기타 문서 정보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급자(Supplier)는 비밀유지에 동의하며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CSSK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타인이나 다른 회사에 공개할 수 없다.

## 20 하도급

공급자(Supplier)는 CSSK의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CSSK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 합의하지 않는 한 하수급인(Sub-Supplier)에 대한 양도, 하도급 또는 이전을 할 수 없다.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공급자(Supplier)의 의무는 양도 또는 하도급에 따라 면제되지 아니하고, 이는 양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급자(Supplier)는 CSS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이전 또는 하도급 계약의 효력을 CSSK에게 주장하거나 대항할 수 없다.

## 21 권리의 포기, 가분성 및 기타

21.1 CSSK가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또는 본 약관에 따른 CSSK의 권리를 포기 또는 유보하더라도, 이는 CSSK의 관련 법률상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구제방법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타 구제방법에 누적적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21.2 본 약관 또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일부가 집행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거나 또는 무효인 경우, 나머지 약관 또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는 이로부터 분리되어 유효하다.

21.3 일방 당사자가 본 약관 또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조건이나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 21.4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다른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CSSK에 대한 모든 통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228-1의 담당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공급자(Supplier)에 대한 통지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 22 광고 또는 "커민스" 상호의 사용

공급자(Supplier)는 공급자(Supplier)가 제작한 상품의 묘사 또는 홍보에 있어 "커민스" 또는 "CSSK" 단어 또는 기타 유사한 단어, 혹은 여하한 커민스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허락하거나, 혹은 공급자(Supplier)가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또는 여하한 CSSK와의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라 제품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여하한 방식으로 광고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3 커민스 정책

- 23.1 공급자(Supplier)는 참조로 포함된 다음의 정책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 (i) 커민스 공급자(Supplier) 행동 규칙;
- (ii) 커민스 기업 환경 정책 및 환경 기준;
- (iii) 커민스 공급자(Supplier) 핸드북;
- (iv) 커민스 그린 공급 사슬 정책;
- (v) 금지된 장비(Materials) 제한.

- 23.2 위 정책은 <https://supplier.cummins.co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3.3 공급자는 본 공급 조건에 동의한 날 또는 그 이전에 공급자에게 통지된 커민스 공급자 행동 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CSSK는 공급자 행동 강령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CSSK가 공급자에게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를 제공한 때에("변경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공급자 행동 강령의 변경은 변경일 이후에 제공되는 구매 주문서에만 적용되며, 당사는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공급자가 변경일 이후의 추가 구매 주문서를 수락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공급자는 관련 법률 및 커민스 공급자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급자 행동 강령 응답 양식에 서명하여 CSSK에 제공할 것을 확인합니다.

- 23.4 공급자는 CSSK의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 CSSK 또는 그 승인된 대표자에게 공급물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 전체 공급망 지도(여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한 자체 명세서, 공급자의 1차 및 하위 공급업체(총칭하여 "하위 공급업체")의 이름 및 주소 목록, 하위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자체 명세서 입력 요소/구성품/원자재 포함),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물과 관련된 시설이나 공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24 존속조항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해지, 취소 및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및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진술 및 보증, 면책 의무, 유인금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 기밀유지 의무,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해지 이전에 발생한 모든 의무와 관련된 조항 및 일반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25 시정조치

본 계약에서 보유된 시정조치는 누적적이며 법률 또는 형평법에서 규정된 여하한 다른 또는 추가 시정조치에 더하여 인정된다.

## 26 기타

- 26.1 불가항력. 의무 이행이 홍수, 가뭄, 화재, 전쟁, 폭동, 테러행위, 불가항력 또는 정부의 행동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의해 방해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본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공급자(Supplier)가 장비(Materials)를 공급할 수 없는 동안, 커민스는 그 재량으로 다른 공급자(Supplier)로부터 제품을 조달할 수 있으나 불가항력 요소가 극복된 때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로 복귀할 것이다.

- 26.2 커민스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Supplier)는 커민스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에게 장비(Materials)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 데이터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장비(Materials)와 관련된 여하한 시설 또는 절차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 26.3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커민스에게 보내도록 요구되는 여하한 통지는 다른 주소가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상에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 커민스판매서비스코리아㈜,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길 228-1 31044, 대한민국].

- 26.4 공급자(Supplier)는 대한민국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며, 커민스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Supplier)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커민스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준수하는데 있어 커민스에게 조력해야 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Supplier)는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커민스가 수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보험증권을 유지하거나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의 종류와 부보 범위는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a) 손해배상 책임보험 - 대인과 대물 손해에 대하여 최소 사고당 대인 대물을 합하여 미화 100 만불 이상의 한도를 가질 것. 공급자(Supplier)는 커민스를 피보험자로 추가하고, 공급자의 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보험(primary coverage)라는 점이 공급자의 보험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b) 자동차 보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대인 대물 손해를 부보하여야 함. 공급자(Supplier)는 커민스를 피보험자로 추가하고, 공급자의 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보험(primary coverage)라는 점이 공급자의 보험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c)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계약이나 역무가 행해지는 국가 그리고/또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부보.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삭제]**

**Option D. (d):** 만약, 서비스가 회계, 법률, 의료 또는 기타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함:

전문직 배상 책임- 최소 사고당 미화 100 만불.

**Option D. (e):** 만약 서비스가 커민스 제품에 들어갈 부품이나 파트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함:

제조물 책임보험 - 최소 포괄단일한도 미화 500 만불 이상. 커민스가 피보험자로 추가되어야 하고, 공급자의 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보험(primary coverage)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함.

**Option D. (f):** 만약 서비스가 커민스 자산의 운반 또는 보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함:

화물/창고업자 법적 배상책임보험- 최소 포괄단일한도 미화 100 만불.

**Option D. (g):** 만약 서비스가 커민스의 부지에서 건축과 관련된 역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함:

최소 미화 100 만불을 단일 한도로 커민스를 위한 작업책임 (Works Liability)보험.

**Option D. (h):** 만약 서비스가 폐기물처리, 커민스 부지의 환경 관련 정화 등(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유해물질 또는 환경관련 역무인 경우, 다음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함:

환경침해책임보험(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최소단일한도 미화 500 만불. 커민스가 피보험자로 추가되어야 하고, 공급자의 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보험(primary coverage)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함. 만약 부보 범위가 기청구를 기준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소급일자는 커민스를 위한 작업이 포함된 날보다 선행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이후 최소 3 년간 지속되어야 한다.

A-1 추가보험(Umbrella/Excess) - 공급자(Supplier)는 주 부보요건에 더하여 최소 미화 100 만불 단일 한도의 추가보험 (Umbrella/Excess Insurance Policy)을 유지하여야 한다.

A-2 공급자(Supplier)는 상기 열거된 부보에 대한 취소 또는 기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최소 30 일전에 커민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3 공급자(Supplier)는 커민스에게 계약편입(contract inception), 작업의 개시 그리고/또는 커민스의 부지의 진입 이전에 상기 최소한의 보험조건을 확인하는 보험유효증서(certificates of currency of insurance)를 제공하여야 하고, 때때로 달리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기로 한다.

A-4 공급자(Supplier)는 보험사에 대하여 커민스 및 그 계열사, 임직원, 이사를 위하여 구상권 포기를 요구하기로 한다. 그러한 구상권 포기는 커민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